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055
----------	------

제안연월일 : 2016. 03. 03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6년 1월 29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966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강구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968번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정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주거정책 관련 법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시행(2015.12.23)됨에 따라 이에 앞서 시행(2012.12.31.)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상위법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며,
- 의안번호 966번 및 968번 모두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과 입법 취지가 같고 현행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의 입법목적 및 운용체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조례 구성 및 내용에서도 유사한 조문이 제안되었는바, 두 조례를 통합하는 대안을 제안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로 변경함
- 나. 주거권을 정의하고 서울시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명시함(안 제2조).
- 다. 시장의 책무를 재정의 함(안 제3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안 제3조의2)
- 마.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규정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시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하되 예외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서울시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함(안 제5조)
- 사. “주거복지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방법 등을 개정하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9조의2, 제15조, 제16조)
- 아.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기능 및 관리·운영방안을 개정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외에 SH공사에서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제21조)
- 자. 부칙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경과조치를 신설함(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로 개정한다.

제1조 중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주거권) 서울시민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제1항 중 “주거약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법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거복지사업”을 “주거정책 및 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목 “주거복지사업”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4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주거복지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서울시의 주요정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제3호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3장 제목 “주거복지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거복지위원회”를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1항 중 “2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2부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를 “도시계획국장,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제5항 중 “간사를 두며”를 “간사 1인을 두되”로 하고, 같은 항 중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를 “주택정책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제목 “주거복지지원센터 등”을 “주거복지센터”로 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중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을 “(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센터의 기능)”으로 하며, 각 호 외 본문 중 “지원센터는”을 “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기준은”을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지원센터의”를 “센터 및 지역센터의”로 하고,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지원센터의”를 “센터 및 지역센터의”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제24조 제목 외의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주거복지지원센터의”를 “센터 및 지역센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거복지지원센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탁·계약한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제19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 칙</b></p> <p><b>제1조 (목적)</b> 이 조례는 <u>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 (정의) (생략)</b> 1. ~ 2. (생략)</p> <p><b>제3조 (시장의 책무) ①</b> 시장은 <u>주거약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u>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b>&lt;신설&gt;</b></p>	<p><u>「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 칙</b></p> <p><b>제1조 (목적)</b> ----- <u>「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u></p> <p><b>제2조 (주거권)</b> <u>서울시민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u></p> <p><b>제3조 (시장의 책무) ①</b> ----- <u>법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u></p> <p>② ----- <u>주거정책 및 사업-----</u></p> <p>-----</p> <p><b>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b> <u>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주거복지사업</b></p> <p><b>제4조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b></p> <p>① <u>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 9. (생략)</p> <p>③ <u>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주거종합계획</b></p> <p><b>제4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b></p> <p>① <u>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1. <u>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p> <p>2. <u>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u></p> <p>3. <u>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u></p> <p>4. <u>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p> <p>5. <u>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lt;삭제&gt;</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약자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li> <li>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li> <li>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li> </ol> <p>&lt;신설&gt; ③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b>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b></p> <p>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주거복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b>제5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b></p> <p>① -----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p> <p>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6조 (주거실태조사)</b> ① 시장은 주거약자 등의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③ ----- <u>연도별 주거종합계획</u>----- ----- <u>서울시의 주요정책</u>----- -----</p> <p><b>제6조 (주거실태조사)</b>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② ~ ⑥ (생략)</p> <p><b>제7조 (주거복지사업)</b>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u>제20조</u>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p> <p>4. ~ 10. (생략)</p>	<p>&lt;삭제&gt;</p> <p>&lt;삭제&gt;</p> <p><b>제7조 (주거복지사업)</b>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제21조</u>----- -----</p> <p>4. ~ 10.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주거복지위원회</b></p> <p><b>제8조 (설치 및 기능)</b></p> <p>① 시장은 <u>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u></li> <li>2. <u>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u></li> <li>3. <u>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u></li> <li>4. <u>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u></li> </ol> <p><b>제9조 (구성)</b></p> <p>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행정2부시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b></p> <p><b>제8조 (설치 및 기능)</b></p> <p>① ----- <u>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u>-----</p> <p>-----</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u></li> <li>2. <u>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u></li> <li>3. <u>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u></li> <li>4. <u>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li> </ol> <p><b>제9조 (구성)</b></p> <p>① ----- ----- <u>15명</u> ----- -----</p> <p>② ----- <u>시장</u>----- -----</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건축국장, 복지본부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p>	<p>③ ----- ----- 도시계획국장,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p>
<p>④ (생략) 1. (생략) 2. <u>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및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u> 3. <u>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⑤ ----- 간사 1인을 두되, ----- 주택정책과장이 된다.</p> <p><u>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u></p> <p>① <u>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② <u>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u></p> <p>④ <u>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u></p>



현행	개정안
<p>제10조 ~ 제13조 (생략)</p>	<p><u>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0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p>
<p>제14조 (회의록) <u>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u></p>	<p>제14조 (회의록) <u>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u></p>
<p>&lt;신설&gt;</p>	<p>제1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u>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u></p> <p>② <u>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u></p>
<p>&lt;신설&gt;</p>	<p>제16조 (해촉) <u>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u></li> <li>2.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li> <li>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u></li> </ol>

현행	개정안
<p><u>제15조 (수당) (생략)</u></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설&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b></p> <p><u>제16조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u> 장은 <u>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p> <p><u>제17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u></li> <li>2. ~ 5. (생략)</li> <li>6. <u>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u></li> <li>7. ~ 8. (생략)</li> </ol>	<p><u>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제17조 (수당) (현행과 같음)</u></p> <p><u>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주거복지센터</b></p> <p><u>제19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u> <u>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p> <p><u>제2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u></li> <li>2. ~ 5. (현행과 같음)</li> </ol> <p><b>&lt;삭제&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 7. (현행과 같음)</li> </ol>

현행	개정안
<p><u>제18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설&gt;</b></p> <p>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u>제21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 14조제3항에 따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 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 -----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센터 및 지역센터의 -----,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⑦ ----- 센터 및 지역센터의 ----- ----- ----- -----</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b>&lt;신설&gt;</b></p> <p><b>제19조 (지도 감독)</b> ① ~ ③ (생략)</p> <p><b>제20조 (위탁계약 취소 등)</b> ① ~ ③ (생략)</p> <p><b>제21조 (재원)</b>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u>주거복지지원센터의 운영</u>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b>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b> (생략)</p>	<p>⑧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22조 (지도 감독)</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b>제23조 (위탁계약 취소 등)</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b>제24조 (재원)</b> ----- ----- ----- 센터 및 지역센터의 ----- -----</p> <p><b>&lt;삭제&gt;</b></p> <p><b>&lt;삭제&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b>제1조(시행일)</b>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b>제2조(유효기간)</b>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u>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잔여 임기까지만 효력을 가진다.</u></p>

현행	개정안
	<p><u>제3조(주거복지지원센터에 관한 적용례)</u> 이 조례 시행 전 위탁계약한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제19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로 본다.</p> <p><u>제4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u>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에 한한다.</p>